

##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인력에 관한 요건

(제7-41조의14 관련)

전문인력의 종류	최소보유 인원수(명)
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또는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	2
<p>※ 비고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이 표에서 “증권운용전문인력”이란 별표 2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.</li><li>2. 이 표에서 “부동산운용전문인력”이란 별표 2에 따른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.</li><li>3. 이 표에서 “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가.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·직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</li><li>나. 별표 2 제1호마목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관·회사,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·직원 및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·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고,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</li></ol></li></ol>	